

제 안 설 명

- 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-

1. 경 과

- 가. 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- 나. 제안일자 : 2007년 11월 3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66회 정례회
 - 2007년 11월 30일,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강태원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
 - 「지방자치법」 제37조를 제42조로 변경함(안 제1조)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내지 107조를 제113조 내지 116조로 변경함(안 제2조)

3. 검토보고요지

(의회운영전문의원 윤기관)

-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제정 근거 및 관련법규 조문번호를 인용하고 있는바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：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：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：“원안 가결”

7. 기 타 의 견：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：“없 음”

9. 제안설명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7조”를 “제42조”로 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제104조 내지 107조”를 “제113조 내지 116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"법"이라 한다) <u>제37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(이하 '의회'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범위)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4. 법 <u>제104조</u> 내지 <u>107조</u>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5. (생략) 6. (생략) 7. (생략) 	<p>제1조(목적) <u>제42조</u>..... </p> <p>제2조(범위)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...<u>제113조</u> 내지 <u>116조</u>..... 5. (현행과 같음) 6. (현행과 같음) 7. (현행과 같음)

관계 법령 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13조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 기관(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114조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5조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

제116조(합의제행정기관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